

사단법인 대한주짓수회

주짓수심판 자격검증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20년 11월 03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주짓수회(이하 ‘본회’ 라 한다) 주짓수 심판 자격검증(이하 “검정” 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 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방송통제위원, 실기보조위원,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위원을 말한다.
2. “답안지” 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3. “비번호” 라 함은 답안지 및 작품채점 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가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한다.
4. “등번호” 라 함은 검정시행 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5. “심판(Referee)” 이라 함은 본회가 발행하는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회, 시·도지회 및 전국규모연맹체, 본회의 협력단체에서 심판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회 심판, 심판위원회, 검정을 시행하는 본회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본회는 주짓수심판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주짓수심판 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본회 사무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필기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자격의 취득) 본회의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본회 심판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주짓수심판’ 이고 등급은 ‘1급’, ‘2급’, ‘3급’ 이다.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주짓수심판 자격증은 “주짓수심판 자격 소

지자가 주짓수 심판법과 실기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으로 주짓수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하여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의 판결을 수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주짓수 심판	1급	○ 본회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동호인대회포함) 주짓수 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국제연맹의 주짓수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 판결하는 직무를 수행 ○ 본회가 주관하는 주짓수 국가대표선발, 주짓수 전국종별선수권 및 이에 준하는 대회의 경기에서 국제연맹의 주짓수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 판결하는 직무를 수행 ○ 본회가 주관하는 주짓수 국제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국제연맹의 주짓수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 판결하는 직무를 수행
	2급	○ 본회가 주관하는 17개시도(동호인대회포함) 주짓수 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국제연맹의 주짓수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 판결하는 직무를 수행 ○ 본회가 주관하는 주짓수 17개시도대표선발, 주짓수 17개시도종별선수권 및 이에 준하는 주짓수 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국제연맹의 주짓수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 판결하는 직무를 수행
	3급	○ 본회 산하 17개시도 지회가 주관하는 17개시도 산하 시,군,구(동호인대회포함) 주짓수 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국제연맹의 주짓수 시합규칙에 의거해 승패를 판결하는 직무를 수행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주짓수심판	1급	○ 주짓수 종목의 최신 국내와 해외 심판법 이론과 실기 능력을 두루 갖추고 각종 심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
	2급	○ 주짓수 종목의 국내 심판법 이론과 실기 능력을 두루 갖추고 각종 심판업무를 준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고급 수준
	3급	○ 주짓수 종목의 기초 심판법 이론과 실기 능력을 갖추고 각종 초보적인 심판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상급 수준

--	--	--

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증 과목(분야 또는 영역)	비고
1급	필기	주짓수 경기규칙	○ 50문항 ○ 4지선다 객관식 ○ 80점 이상
	실기	주짓수 심판법(수신호 포함) 실기	○ 80점 이상
2급	필기	주짓수 경기규칙	○ 50문항 ○ 4지선다 객관식 ○ 70점 이상
	실기	주짓수 심판법(수신호 포함) 실기	○ 70점 이상
3급	필기	주짓수 경기규칙	○ 50문항 ○ 4지선다 객관식 ○ 60점 이상
	실기	주짓수 심판법(수신호 포함) 실기	○ 60점 이상

제10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심판	심판 응시자격
1급	1. 2급 심판으로 3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국제심판 자격 보유자로서 본회 심판위원회가 추천한 자 2. 25세 이상으로 감염병 등의 질환이 없는 자 3. 본회가 실시한 심판강습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급	1. 본회의 3급 심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2. 22세 이상으로 감염병 등의 질환이 없는 자 3. 본회가 실시한 심판강습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급	1. 20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 본회의 회원으로 주짓수 퍼플벨트 이상인 자 3. 감염병 등의 질환이 없는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본회가 실시하는 심판강습을 이수한 자

제11조(검정의 일부 면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1급은 평균 80점, 2급은 평균 70점, 3급은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1급은 평균 80점, 2급은 평균 70점, 3급은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장 수험원서

제13조(검정안내) 본회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본회 사무처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각 시도협회를 통한 단체접수를 권장한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시험장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6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질병이나 사고를 증명할 수 있으며 검정일 7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본회 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 제18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① 사무처는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수수료 내역 등을 본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 필기시험 면제자 명단, 필기시험 과목면제자 명단, 실기시험 면제자 명단 등 수험자 파일을 본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본회는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20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사무처는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침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 수험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21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은 심판위원장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사무처는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3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본회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2. 본회 심판위원회 위원 가운데 심판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주짓수 국제심판으로서 해당 종목에 5년 이상 심판으로 종사한 자
4. 주짓수 1급 심판으로 해당 종목에 10년 이상 심판으로 종사한 자
5.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5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위원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장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심판위원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심판위원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6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심판위원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7조(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본회 내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심판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본회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본회 심판위원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심판위원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 관리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장 책임관리 위원은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본회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장 책임관리 위원은 본회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⑤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8장 검정시험

제29조(검정시험 총괄) 시험장 책임관리위원회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 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 집행 및 시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 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 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31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2조(수험자 확인) 시험장의 책임자 혹은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때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분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문제지 배부) 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4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9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7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에 10년 이상 심판으로 종사하는 자
2.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직종을 15년 이상 자영하는 자
3. 해당 분야의 직업훈련 자격이 있는 자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10년 이상 재직하는 자
4. 해당 종목 분야에서 10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5. 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교사로 10년 이상 재직하는 자
6.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7.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38조(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2.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 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실기시험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4.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검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보조위원”은 시험 준비 및 시험 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준비, 동력, 통신, 시험장 점검을 담당한다.
 7. “실기보조위원”은 실기 시험감독위원의 감독 및 채점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9조(본부위원의 임무 등) ①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로부터 검정시험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한 답안지를 본회로 운반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40조(답안지 인계) ①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 상태 확인 후 본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1조(정답교부) ① 본회 사무처 검정업무 담당자는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42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11장 실기시험 채점

제43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① 실기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중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 평가표에 비번호를 부여하거나,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자료관리) ①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5조(합격자 공고) ① 본회 회장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3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7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회는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4장 자격소멸

제51조 (무자격자의 활동 금지) 본회로부터 심판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본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52조 (심판의 자격소멸) 자격소멸이라 함은 징계 등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 본인의 자격증 반납, 또는 개인적인 유고 등으로 심판의 자격이 영구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자격의 소멸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의 심의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장 보수교육

제53조 (정의) 보수교육은 본회로부터 심판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자격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매 년 본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4조 (대상) 보수교육은 본회 발급 심판 자격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5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의무 이행 기간) ① 협회로부터 심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제56조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② 주짓수 심판 자격 등급별 보수교육 의무 이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6조 (보수교육 인정 범위 및 이수 기준) ① 보수교육은 1일~2일 간, 총8시간~10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② 보수교육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짓수 심판 이론과 실제의 재교육
2. 경기규칙의 적용과 실제
3. 심판자질 향상에 필요한 소양교육
4. 기타 심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교육 항목에 대한 내용과 점수는 매년 본회가 별도 공지한다.

④ 그 외의 보수교육의 세부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57조 (교육의 권한 및 위임) ① 보수교육의 전반적인 권한은 본회에 있다.

② 보수교육은 본회, 시도지회 또는 전국연맹이 개최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득한 단체가 개최할 수 있다. 시도지회, 전국연맹 또는 승인단체가 보수교육의 개최를 희망할 경우 시도지회, 전국연맹 또는 승인단체는 본회에 서면으로 사전 개최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로부터 승인을 득해야만 한다.

③ 보수교육 종료 후 시도지회, 전국연맹 및 승인단체는 본회에 서면으로 보수교육 개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8조 (자격의 갱신 및 정지) ①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는 연간 자격의 효력이 연장된다.

②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자격이 정지된다.

③ 정지된 자격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본회의 자격 재부여 절차를 거쳐야만 자격효력이 회복 된다.

제 16 장 보 칙

제59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2020.11.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